

이탈리아의 특허제도



徐
大
錫
〈
理
士

I 制度的 概要

이탈리아의 특허법은 1939년 6월 29일 勅令 第1127號 特許權에 관한 法規正文(Regio decreto 29 ginton 1939, no. 1121 Testo delle disposizioni legislative in materia di brevetti per invenzioni industriali) 및 1940년 2월 5일 칙령 제244호 특허권에 관한 施行規則, 其他 法令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이 나라에서 특허권에 관한 基本的 事項은 民法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特異한 點이라 하겠다.

1942년 3월 16일 칙령 제262호로 그해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2次大戰중에도 効力이 維持되어 왔는데 이 民法에서 明示된 특허권에 관한 규정의 內容을 概說하면 다음과 같다.

1. 産業的 發明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者는 法律이 定한 制限內에서의 條件에 따라 그 發明을 實施, 處分하는 排他的 權利를 가지며 그 發明에 관계되는 生産物의 買賣도 할 수 있다.

2. 특허의 對象이 되는 것은 産業上 利用될 수 있는 新規한 發明으로서 産業的 作業의 新舊한 方法이나 工程 機械, 器具, 道具 또는 機械的 裝置, 科學的 法則의 技術的 利用등이다.

3. 新規한 製造 方法 또는 公정에 관한 특허는 그 權利者에 대하여, 그 方法, 公정을 排他적으로 사용할 權利가 賦與된다.

4. 그 실시가 아직 効力이 있는 先行의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發明의 실시를 包含하는 특허는 先行特許權者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는다고 보나 先行特許權의 同意없이 特別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限 실시 또는 사용할 수가 없다.

5. 특허권은 發明者 및 그 權利承繼人에 歸屬된다.

6. 産業的 發明에서 發生된 權利는 讓渡할 수가 있다.

7. 勞動提供者는 그 勞動關係의 業務範圍에서 이루어진 發明은 發明者로서 認定되는 權利를 갖는다.

8. 權利賦與에 관한 條件 및 節次, 權利부여에서 일어나는 權利行使, 存續期間은 特別法의 規定에 따른다.

② 特許制度의 運用

1. 特許의 對象 및 特許權者

가. 特許의 對象

이탈리아에서의 특허대상은 産業上 이용될 수 있는 發明으로서 産業적 作業의 新舊한 方法, 公정, 기계, 기구, 장치, 産業상의 生産物, 과학적 법칙의 技術적 이용등이다. 그러나 法律, 公序良俗에 違反하는 産業상의 發明은 특허대상에서 除外하고 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醫藥品, 의약품의 製造工程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特許廳은 이런것을 確定하기 위해 生産物의 性質에 관한 最高衛生審議會(II Consiglio Superiore di Sanità)의 意見을 듣고 있다.

그러나 特許出願이 寄託되기 以前에 國家領域內 또는 外國에서 실시할 정도로 普及되지 않은 産業상의 發明은 新舊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發明의 最初의 보급이 法的으로 인정되는 國立學術協會 또는 學會에서 文書로 發表된 報告書에 이루어져 그 發表日로부터 12個月以內에 특허출원이 기탁되었을 때 특허의 優先權은 그날로 溯及된다.

나. 特許權者

특허권은 發明者(invenzione) 및 그 權利承繼인(Suoi aventicosa)에 귀속하고 産業상의 發明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願書에 그 權利의 성질을 詳細히 記述하여 특허권이 귀속하는 1人 또는 몇사람을 指定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被指定者의 受諾은 그 特許賦與 以前에 특허청에 通知할 必要가 있는데 그 指名은 特許登錄原簿 및 特許證에 기재하여야 한다.

外國人은 이탈리아國民을 위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허권을 取得할 수가 있는데 특허권에 관한 國際協定에 따라 國家의 領域內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過去나 現在 또는 將來에 인정되는 모든 利益은 이탈리아 국민 및 이탈리아 領有地所屬民에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에 勤務하는 公務員이 退職하게 되면 그로부터 2년이 經過한 後가 아니면 直接 또는 他人을 통하여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讓受人이 될 수가 없다.

산업상 발명이 契約, 雇傭關係의 履行으로 報償되었을 때 그 발명의 권리는 使用者에 귀속되며 다만 그 발명의 발명자로서 인정되는 권리만은 발명자에 귀속시키고 있다.

2. 特許出願, 審査 및 登錄

가. 出 願

特許登錄의 출원은 발명자, 권리승계인 또는 외국에 출원을 기탁한 자나 그 권리의 승계인이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출원된 事項을 특허원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出願者는 國家領域內에 居住할 때는 外國特許出願만을 할 수가 없고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에 앞서 商工部에 許可를 申請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야만 외국특허출원을 할 수가 있다.

이때에도 상공부는 國防部의 의견을 들은후 허가할 수가 있고 許可申請後 60일이 지나서 拒絕의 通知를 받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看做한다.

出願書에는 출원의 내용을 詳細히 나타내는데 필요한 明細書(la descrizione) 및 圖面(i disegni)을 添付하여야 하고 발명은 專門家가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므로써 그 대상에 相應하는 名稱으로 識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출원 또는 博覽會出品으로 발생하는 優先權主張에 있어서는 이것을 주장하는자는 우선권의 存在를 證明하는 書類나 보고서를 특허청에 提出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출원은 1發明(una Sola in Venzione)을 대상으로 해야하고 1 以上の 발명이 출원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출원을 1발명으로 限定할 것에 期限을 지정하여 命命하여야 한다.

출원에서 主된 발명의 改良을 構成하지 않은 발명에 追加特許가 출원되었을 때에는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

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追加出願을 주된 특허출원으로 變更할 것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고 이경우의 그 출원은 原出願日로 간주한다.

나. 審 査

正規方式이거나 명칭이 발명의 대상에 對應하고 있음이 인정된 출원의 審査는 발명이 신규한 것으로 산업상 이용이 可能한 것인가, 또는 법률이나 公序良俗에 위반하거나 의약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출원이 아닌지를 確認하는데 있다.

그러나 심사는 발명의 기술적 또는 經濟的價値에 대하여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며, 위의 여러가지 조건에 맞지 않을 때 특허청은 그 출원을 拒絶한다.

食品 또는 飲料品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은 특허를 부여하기에 앞서 그 발명이 健康에 有害한지의 與否를 最高衛生審議會에 의견을 묻기 위해 명세서 및 관계서류를 發送하고 최고위생심의회에서 그 발명이 건강에 유해하거나 이럴 憂慮가 있다는 의견이 表明됐을 때 특허청은 그 출원을 拒絶한다.

그러나 심의회의 의견이 건강상에 支障이 없다고 할 때에는 특허청에 「최고위생심의회 의견을 求했음」이란 表示를 記入하게 된다.

출원의 심사에서 생기는 의견은 答辯의 기한을 지정하여 當事者에 통지하고 특허청은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를 除外하고는 指定期間이나 延長期間을 경과한 후에 到達한 答辯書를 考慮의 대상으로 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하거나 그 1部를 거절할 때는 그 要旨를 출원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抗告할 권리가 있다.

다. 登 錄

심사가 終結되어 특허출원이 受理될 것이 決定되거나 抗告審議委員會에서 수리할 것에 審決이 났을 때 특허청도 특허등록원부에 이것을 證明하는 사항을 登載함과 아울러 同日字로 正當한 권리가 있는 자로 하여 특허증을 交付한다.

특허의 등록은 특허의 努力 및 발명에서 생기는 권리에 관한 訴權의 行使에까지는 影響을 주지 아니한다.

특허청은 特許公報(nel Bollettino dei brevetti)에 登錄特許에 관한 公知事項을 揭載하여 公告하게 되는데 등록한 날로부터 3個月이 되면 各特許의 명세서 및 도면은 公衆의 閱覽에 부쳐지고 아울러 印刷된다.

그러나 명세서 및 도면의 公開나 인쇄는 當事者의 請求에 따라 特許登錄日로부터 6개월이 超過되지 않는 기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自己의 이름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特許의 實施, 消滅 및 無効

특허의 대상이 되는 산업상의 발명은 국가의 요구에 중대한 支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영역내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고 국가영역내에서 政府主權 또는 허가를 別途로 받아 開設하는 박람회 最初로 出品한 物品에 관한 발명은 그 물품이 적어도 10일동안 出품되었을 때 또는 박람회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그 會期間에 出품했을 때 박람회에 그 물품이 出품된 날로부터 閉會된 날까지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생산된 物의 국가영역내에서의 紹介 또는 販賣는 발명의 실시로 보지 않고 있다.

특허권은 그 발명이 登錄後 3年 以內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3년 이내에 실시한 후 그 실시가 3년동안 中斷되었을 경우에는 消滅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不實施가 特許權者의 意思에 反하는 사유로서 起因되었을 때는 특허권은 소멸

되지 않으며 資產의 不足으로 因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편 특허권은 다음의 경우에도 소멸된다.

(1) 納入期間 到來後 6個月 以內에 年度別 特許料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2) 同一産業上의 발명에 대하여 國際條約 또는 우선권에 따라 先行出願日의 효력을 가진 다른 특허가 후에 등록되었을 때이다.

한편 다음에 揭記된 경우에 특허권은 無効가 된다.

(1) 발명은 특허대상으로서 산업상 이용하는데 실행하거나 公知되지 않은 要件을 갖추지 못했을 때

(2) 先行出願日의 효력이 있는 특허대상이 되었거나 산업상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

(3) 명세서에 專門家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說明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4. 特許權의 存續期間과 料金

이탈리아의 特許權 存續期間은 出願寄託日로부터 15년이며 更新이나 延長은 할수가 없다.

한편 年數料 및 特許料는 別表와 같다.

特許料金一覽

項 目	料 金	項 目	料 金
1. 特許出願手數料	2,000리라	第 10 年 度	15,000리라
2. 追加特許出願手數料	4,000 "	第 11 " "	18,000 "
3. 委任狀	1,000 "	第 12 " "	21,000 "
4. 明細書印刷料		第 13 " "	25,000 "
① 10 面 以內	4,500 "	第 14 " "	30,000 "
② 10~20 面 以內	9,000 "	第 15 " "	35,000 "
③ 20~50 面 以內	30,000 "	7. 年度別 特許遲滯料	
④ 50~100面 以內	60,000 "	① 最初의 3個月 以內	1,200 "
⑤ 100 面 以上	120,000 "	② 다 음 3個月 以內	3,000 "
5. 圖面의 印刷料(枚當)	2,000 "	8. 明細書圖面의 公開 및 印刷 延期 手數料	1,500 "
6. 年度別 特許料		9. 追加特許登錄料	4,500 "
第 1 年 度	1,000 "	10. 抗告審理委員會에 대한 抗告 手數料	1,500 "
第 2 " "	2,000 "	11. 讓渡證書 또는 擔保權設定 證書의 登錄料	2,500 "
第 3 " "	3,000 "	12. 證明書 手數料	500 "
第 4 " "	4,000 "	13. 登錄抄本 交付手數料	500 "
第 5 " "	5,000 "	14. 明細書 및 圖面의 複寫認證料	500 "
第 6 " "	8,000 "	15. 特許原本 複寫手數料	500 "
第 7 " "	9,000 "		
第 8 " "	10,000 "		
第 9 " "	12,000 "		

科學은 國力이다 發明하여 愛國하자!